

강원관광대학 휴·복학에 관한 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학칙 제31조 휴·복학에 따른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 ① 휴학이라 함은 가사, 질병, 군입대 등 학칙이 정한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상을 수업할 수 없을 경우 학장의 허가를 얻어 학적을 보유하되 재학(수업 받지 않음)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복학이라 함은 1학의 사항을 만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학장의 허가를 얻어 재학생태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3 조 (휴학의 종류) 휴학은 일반휴학, 군휴학 으로 구분한다.

① 일반휴학(가사휴학, 질병휴학, 기타휴학)

1. 가사휴학 : 가정형편, 해외연수 등으로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자.

2. 질병휴학 : 질병으로 인하여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상 수업할 수 없는 자의 휴학으로 전문의사가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된 자에 한 함.

3. 기타 휴학 : 천재지변,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해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상 학교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자

② 군 휴학

1. 재학 중 군입영 통지서로 인하여 입영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는 자의 휴학

2. 일반휴학 중인 자로서 군복무확인서 및 군 입영통지서를 첨부해 휴학연기원을 제출하는 자의 휴학.

제 4 조 (복학의 종류) ① 복학은 일반복학, 군복학 으로 구분한다.

1. 일반복학 : 일반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휴학 당시의 학년 학기로 복귀하여야 하는 자.

2. 군 복학 : 군휴학,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자가 기간이 만료됨으로 복귀하여야 하는 자.

3. 역 복학 : 복학자가 학사경고(1.0미만)를 받은 경우 복학하는 학기 전학기로 역복학이 가능하다.

② 일반휴학 중 군 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제적 등의 학적 사항을 정정, 조치받아 제적을 군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 받을 수 있다.

제 5 조 (휴학 및 복학의 제한) ① 신입생은 첫 학기 때 군 휴학, 질병휴학 이외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. (단, 질병휴학 시에는 전문의사에게 발급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)

②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후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.

③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장이 정한 기간에 복학하여야 하며, 최대 복학기간은 4주까지 가능하다.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. (다만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후에 제대하는 군 휴학자의 경우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, 휴가증 등의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복학을 허가 할 수 있다.)

제 6 조 (출원횟수) ① 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 할 수 없으며, 재학기간 중 3회에 한 하여 허가한다. 다만, 군 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다.

② 재입학 한 학생은 일반휴학 1회로 허가한다.

제 7 조 (휴·복학시기) ① 일반휴학자의 휴학기간은 2학기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군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입영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한다.

③ 군 휴학원을 제출하고 군복무중인 학생이 장단기 하사관을 지원하였을 경우 대학에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별도의 통보가 없었더라도 전역 후 군복무기간 연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군복무에 따른 휴학기간의 연장으로 인정한다.

④ 학사경고(1.0미만)를 받은 학생이 복학을 할 경우 1학기휴학(역 복학)이 가능하다.

제 8 조 (구비서류 및 절차) ① 휴·복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친 후 교무처에 제출한다.

② 휴·복학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휴학에 필요한 서류 - 휴학원서 또는 휴학연기원, 기타증빙서류(입영통지서, 전문의사진단서, 연수허가서 등)

2. 복학에 필요한 서류 - 복학원, 기타증빙서류(전역증, 주민등록초본, 법령에 의한 소지해지 통지서 등)

제 9 조 (휴·복학의 제출시기) ① 일반휴학은 학장이 정한 등록기간 중에 휴학함을 원칙으로 하되, 개강 전까지 미등록 일반휴학이 가능하며, 등록을 필한 자에 한 하여는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휴학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등록을 필한 자 중 질병휴학, 군 휴학자는 수업일수 4분의 2선 까지 휴학이 가능

하다.

③ 군입영 통지서에 의한 군 휴학자는 입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 할 수 있다.

④ 일반휴학 중 군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입영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복학원서의 제출시기는 복학하여야 될 학기에 학장이 정한 등록기간 중으로 하며, 학장이 정한 등록기간 중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개강 후 4주까지는 복학을 하여야 한다. 미복학 시에는 제적처리 한다.

제 10 조 (성적인정) ① 수업일수 4분의3선 이후 군 휴학 및 질병휴학을 하는 자는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해당자가 당해 학기 성적을 포기할 경우 그 학기 납입금은 이월한다.

제 11 조 (휴학자의 납입금) 현금등록 기간 중 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 허가를 얻은 자는 그 학기 납입금은 납입치 않을 수 있다.

제 12 조 (학적변동자의 수업료 반환) (삭제 2008.02.11.)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제정 이전에 행한 휴·복학은 이 규정에 적용한 것으로 본다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